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공익 목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창원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5. “개인영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처리”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10. “전용망”이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11. “공중망”이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xDSL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로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설치·운영계획의 수립) 운영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지침을 수립하거나 공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현황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그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총괄·책임관의 지정) ① CCTV에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을 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이용·열람·제공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2. 개인영상정보 관련 민원의 접수 및 불만의 처리
3.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영상정보취급자(부서별 CCTV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
5. 그 밖에 소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안내판의 설치 및 부서별 세부운영사항) ① CCTV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운영부서의 장은 설치장소에 따라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규격을 조정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예는 별지 서식 제3호를 참고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운영부서의 장은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3.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4.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운영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실태점검) 운영부서의 장은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보관 및 파기)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설치·운영 세부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5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처리기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p>「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 ○ 귀하</p>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CCTV 설치·녹화 안내

본 청사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청사 보안을 위하여 건물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등에 **무인감시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촬영범위	청사 출입구, 공원, 주차장, 본관·별관 지하 통로
운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녹화
책임자	00000팀장 연락처:055-712-0000